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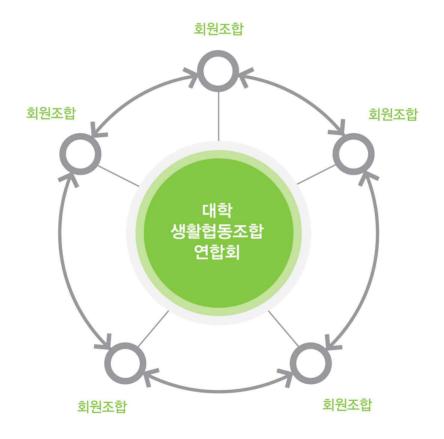
(가칭)학교협동조합 활성화법 정치토론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University Cooperatives

대학생협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한 연합조직으로 교육서비스, 공급서비스, 경제사업서비스, 각 대학생협 및 유관단체와 네트워크, 대정부활동등을 통해 대학생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01_ 회원조합간 네트워크 일상적 정보교류
02_ 구매력결집 공동구매 각종교육 등 연대사업 진행 회원조합 지원
03_ 연대회의 참여 공동구매 진행 교육연수 참여

〈 자료집 순서 〉

토론회 순서 안내	5
발제 1 -학교 내 학교협동조합 제도정비의 의미	7
발제 2 -(가칭)학교협동조합 활성화법 제정 목표와 조문 해설	9
개인토론자료 1 -중고교 협동조합과의 연대 및 교류 확대의 의미	11
개인토론자료 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법의 필요성	17
참고자료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률 초안	25



〈 일정 진행 〉

1) 사전진행 및 발제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10분	인사말	□ 최상진(한국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15분	주제 발제।	□ 발제 : 현창열(정책위원장) ■ 학교내 학교협동조합에서의 제도정비의 의미 ■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15분	주제 발제 ॥	□ 발제 : 권종탁(사무국장) ■ (가칭)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 제정 목표 ■ (가칭)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 조문 해설	

2) 개인 토론 부분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10분	개인토론 ①	□ 지상윤(상지대생활협동조합)	예정
10분	개인토론 ②	□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	예정

3) 상호 토론 및 종합 토론 부분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30분	상호토론	□ 좌장 : 최상진(한국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 상호 토론 및 발제자와의 토론 진행 ■ 해당 결론부분에 대한 정리	





학교 내 학교협동조합 제도정비의 의미

현 창 렬 (전남대생활협동조합)



❷ 발제 2

(가칭)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 제정 목표와 조문 해설

권 종 탁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률 제정을 위한 중·고 협동조합과의 연대 및 교류 확대의 의미

지 상 윤 (상지대생활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률 제정을 위한 중·고 협동조합과의 연대 및 교류 확대의 의미

상지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지상윤

1. 대학생활협동조합과 중·고협동조합과의 차이 인식

대학생활협동조합과 중·고협동조합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입장에 대한 상호 차이가 여러 부분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중·고 협동조합	대학생활협동조합		
관련법 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생	미성년자	성년자		
참여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수, 행정직원, 학부생, 대학원 생, 조합실무자, 외부 기관 등		
실무자	교사, 행정직원	조합실무자		
주요활동	협동조합 조직을 통한 학생 교육	현동조합 조직을 통한 사업 경영		
사업의 규모	매우 작은 규모 (연매출 1억원 정도)	중소 내지 중견기업 규모		
구성원 수	매우 적은 수(1천명 내)	대부분 1만명 이상의 수		
확장성	다양한 사업거리를 찾아야 함	다양한 교육커리를 찾아야 함		

상기 표에서와 같이 중·고협동조합과 대학생협은 여러 부문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 중 중·고협동조합은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학부모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특정 매장사업의 규모의 확대보다는 매장을 통한 협동조합 교육과 가치의 확장, 그리고 기관운영을 통한 배움의 장의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대학생협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대학교 운영의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매장 사업의 규모 확대와 경영실적의 확립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두면서 복지사업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자매장 사업에 대한 해소를 기반으로 하면서 적정 수익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학교가 복지 매장사업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현실속에서 적정 잉여의일부분을 대학으로 전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고협동조합과 대학생활협동조합이 그 설립취지나 운영방식의 극단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상 주요 방점을 두는 입장의 차이라고 보아 야 한다. 중·고협동조합은 미성년자가 학생임원 및 조합원이고 협동조합 실무자는 현직 교사들이므로 사업의 운영의 확대와 발전보다는 협동조합의 교육과 그 실천에 주로 관 심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상당수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학교의 특성상 외부인의 잦은 출입으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도 그 대상으로 복지매장을 운영하는 측면 도 있어 사업에 대한 유행과 그 아이템의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매출 액의 증가와 일정수준의 사업 잉여의 발생이 존재하여야 하며, 적자누적은 곧 조합 파산 이라고 하는 상시적 경영 위기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상호 인식하여 상호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가기 위해 상호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양자에게 존재하는 온도차를 감소시키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대학생활협동조합과 중·고협동조합과의 연대 가능성

두 조직의 상호 연대 가능성은 이미 그 차이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중과 방점의 차이라는 현실적 스킬의 차이이지 근본적인 태생적 차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즉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사업의 비중과 중요성을 유지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조합원교육과 홍보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야 한다.

교육과 홍보는 당장 수익이 나타나거나 그 목적이 수익을 내는 분야도 아니지만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야 하는 분야이다. 단순히 원칙적인 선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체적 활동과 투자 그리고 결과물을 챙겨야 한다.

대학생협이 각 회원대학생협별로 이 교육과 홍보분야를 실천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당장 적정 수준까지 동원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초기에는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 회가 이 기능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이력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만 한다. 일본 대학생 협과 그 연합회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류사업과 더불어 교육과 홍보의 역할은 동연합회 가 주로 실행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한편 중·고협동조합들은 교육과 가치의 추구와 실천도 중요하지만 학교와는 독립된 법인으로써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살림살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 초기부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경영의 안정과 사업의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 교사라는 직분과 학부모라는 위치,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상황에 구애되지 말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매장 사업의 불안함이 학교의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아무리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더라고 중·고등학교내에서 협동조합이 지속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3. 대학생활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 또는 생활협동조합과의 연대

대학생활협동조합은 학교를 사업의 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부운영의 구조나 역사적인 교류의 경험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의 연대 사업과 법·제도적 정비 측면에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 및 제도의 제안이나 주무부처의 변경 등의 공동추진을 보아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대학생활협동조합만의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기관내에 있는 생협으로써 그 인재의 발굴과 배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대부분은 협동조합에 대한 사전적 경험이나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학습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협도조합에서 근무하면서부터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학생시절부터 협동조합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로 인해 협동조합에 대한 선입견의 해소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직업으로써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인 학생들과 일반 생활협동조합들과의 연대와 교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 (교육위원회의 중요성)

이러한 대학생활협동조합과 중·고협동조합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 내지 생활협동조합과 의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연대와 교류를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교육 위원회는 그 취지나 활동의 대상이 대학생활협동조합 실무자, 임원, 학생조합원 등 다양한 교육의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대학생활협동조합이 매장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그 가치와 역할 그리고 미래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주요한 창구라고 보여진다. 현재 교육위원회가 교육과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중·고협동조합과의 교류의 주요창구가 되고, 일반협동조합과의 교육과 홍보분야에서도 상호 발전을위한 활동을 넓혀갔으면 한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률의 필요성

주 수 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률의 필요성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복지만이 아닌 교육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새로운 학교협동조합이 등장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중고등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대학생협과는 다른 새로운 학교협동조합 모델이 생겨났습니다. 2013년 서울의 영림중. 경기도 성남의 복정고등학교 단 2개가 있던 상황에서 현재 43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수리 내지 인가를 받아 정식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마지막 장의 표를 참고해주시 기 바랍니다. 인가받지 않고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곳까지 합하면 50여 개에 이릅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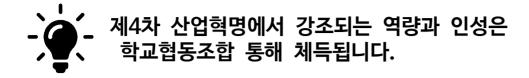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1958년 설립된 충남 홍성의 풀무학교가 대학생협에 앞서 있기 도 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중고등학교에 학교협동조합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역 사가 끊어졌던 학교협동조합이 1987년 6월항쟁 이후로 대학에서 활성화되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다시금 초중고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협이 학내 복지문제의 해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초중고 학교협동조 합의 활발한 설립은 복지를 넘어선 새로운 교육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행처럼 떠도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변화만이 아닌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합니 다. 무엇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했다는 점에 주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시대에 앞으로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65%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경제인들은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과 정보 습득이 아닌 창의성.협력 과 같은 역량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역량과 인성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역량과 인성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체득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답으로서 제시한 길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길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교육의 장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교 매점의 이름인 '한입두입'을 짓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고 매점에서 취급할 문구류를 선정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 시간에 알파문구 본사에 찾아가기도 했었다."

"특히 학교협동조합은 일반 매점과 다르게 매니저 한 분으로 매점 운영에 한계가 있을 때 학생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학생은 실제로 급여를 받으면 서 일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근로 현장을 체험할 수도 있다."

(I Love 학교협동조합)(박선하외, 맘에드림, 2017) 중에서

아이들은 학교 안의 다양한 사업을 경험하고 친구들과 함께 의기투합하며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힘들면서도 스스로 너무 재미있어서 하게 되는 활동들입니다. "먼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 매점을 기획해 보는 경험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실에 담아 내는, 내게는 색다른 시간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의 주역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그냥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 봐라."라며 흰 도화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협동 조합에 필요한 여러 사전 준비 교육들이 이뤄지고 학교를 벗어나 지역과 연계하고 다른 학교로도 연계된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협동의 즐거움과 방법'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미래 사회의 필요한 역량과 인성으로서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 내며 그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고 합니다. 앞서의 책에서도 "세 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덕분에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다. 생각해 보면 그때 나는 '협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즐겁고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시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함께 생각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 대학생협 역시 교육을 다시 사고해야합니다.

작년 한해 하승우, 조현경, 주수원 그리고 대학생협연합회와 함께 초중고 학교협동조합과 대학생협을 연계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협동조합 발전전략-협동조합은 교육이며, 나라의 미래이다-〉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캠퍼스협동조합 사례 등을 보완해서 7월경에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저자들이 1년간 공동 논의와 연구를 하며, 결론을 내린 연결고리의 핵심도 "교육"이였습니다. 공교육과 고등교육이 취업과 노동을 위한 준비단계로 전락한 한국의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교육 가치는 교육에 대한 고전적인 입장이나 교육의 시장화, 어느 한 편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양자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제 3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학생협 역시 마냥 복지의 관점으로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배워야하고 연습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예비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란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협 활동을 했던 이들이 자연스레 각 대학생협의 실무자가 되었고, 협동조합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어떠할까요? 2017년 초, 한겨레신문사는 세대별로 민주주의로 연 상되는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에 50대는 '자유', 3~40대는 '비효율', 20대는 '허세'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비효 율, 허세, 각 세대의 인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20대는 앞선 세대들보다 더욱더 불평등한 상황에 놓였고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기에 민주주의를 가치보다는 '허세'로 인식하 게 되었습니다. 아마 협동에 대해서도 비슷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협동은 이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끼리 주 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을 마련을 위해 협동조합 주택/은행을 만들고, 푸드트 럭 창업을 협동조합으로 합니다.

대학생협 역시 학생들의 참여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다시금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아예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교육활동들을 더욱 부각시 키고 이를 통해 대학생협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자고 이야기해봅니다. 아래는 경희대에 서 경희대에서 진행한 「다른경제, 다른기업: 협동조합」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생협과 연계해서 풀어낸 활동들이니다.

협동조합은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7원칙 중 5번째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도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에서도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해볼 수 있는 것이죠. 밀어내기 창업이 아닌 협동의 원리를 배우고 경험으로서 익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대학에서부터 연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경희대 두레생협매장관련 인근 사업체와의 가격비교 및 홍보 프로젝트



신규건물에 생협입점을 위한 설문과 홍보활동 관련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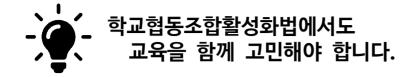
경희대에서의 수업 통해 풀어낸 생활문화사업으로서 생협문화데이에 생협약방 프로젝트

우리한번 알아볼까?

_ 생산비용 =

저렴하고 잘 좋은 물품료 수익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장학급 증가



대학은 갈수록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협 역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초 중고는 새로운 교육의 변화 지점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적인 어 려움도 있으며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초중 고와 대학이 함께 도와가며 풀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협동조합활성화법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대학생협의 공증면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하며 초중고 총회의사록 공증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증면제 말고도 미성년자 임원등기, 교사들의 임원 겸직 방안, 수의계약 근거조항, 시설사용료 감면 등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사업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가운데 교육을 고민하며 차근 차근 내실을 다져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학생협을 외부에서 바라보았을때는 사업적인 측면만 강조된 협동조합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억울한 부분 도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대학생협 학생위원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했 으니까요. 그동안의 활동들을 더 의미부여하고 외부에 알려내는 활동도 필요하며, 동시 에 대학생협의 교육적인 부분을 더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30년의 역사에 비해서 초중고 학교협동조합은 이제 5년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연합회 논의가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정책과 제도 역시 논의된 시기가 짧습니다. 초중고가 교육청, 교육부와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데 반해 대학은 다른 양상이기도 하며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새로운 미래의 장을 위한 의미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이란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논의해가는 시작점으로 생각하 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교육하자" 이렇게 외쳐봅니다.

	협동조합명	인가일	지역	학교명		유형
1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	13.09.03	서울	중	영림중	매점&교육
2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3.09.03	경기	고	복정고	매점&교육
3	덕이고 교육복지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4.01.08	경기	고	덕이고	매점&교육(동아리)
4	금성교육문화협동조합	14.07.23	부산	초	금성초	교육(방과후)
5	사회적협동조합 의정부여자중학교 모꼬지	14.08.07	경기	중	의정부여중	매점&교육(생태)
6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14.08.19	서울	고	독 산고	매점,교육
7	한문영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4.12.19	경기	고	한국문화영상고	매점(로컬푸드)
8	한국도예고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4.12.19	경기	고	한국도예고	매점&교육
9	흥덕고 사회적협동조합 흥덕쿱	15.02.25	경기	고	흥덕고	매점&교육
10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5.02.25	서울	고	삼각산고	매점&교육
11	기흥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5.03.24	경기	고	기흥고	매점&교육
12	문경여자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15.08.10	경북	고	문경여고	매점&교육
13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15.08.25	서울	고	삼성고	매점&교육
14	선사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15.10.20	서울	고	선사고	매점&교육
15	신길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15.12.02	경기	고	신길고	매점&교육
16	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6.02.02	서울	중	국사 봉중	매점&교육
17	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16.02.15	경기	초	조현초	교육(방과후)
18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6.02.15	서울	고	가재울고	매점&교육
19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16.03.11	서울	초	월천초	교육(방과후)
20	마을교육경제공동체 별내고 사회적협동조합	16.04.22	경기	고	별내고	매점&교육
21	금병초등학교비단병풍 사회적협동조합	16.06.01	강원	초	금병초	매점&교육
22	춘천한샘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6.06.02	강원	고	한샘고	매점&교육
23	현암고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16.06.27	경기	고	현암고	매점&교육
24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6.06.27	서울	초	양화초	교육(방과후)
25	계성샛별 사회적협동조합	16.07.28	서울	고	계성고	매점&교육
26	함평영화학교협동조합 해밀	16.08.23	전남	고	함평영화	평생직업
27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6.08.26	서울	중	길음중	매점&교육
28	신천사회적협동조합	16.09.07	서울	초	신천초	교육(방과후)
29	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	16.09.20	서울	중	한울중	매점&교육
30	사회적협동조합 술이홀통일출판사	16.09.26	경기	고	문산수억고	교육(진로)
31	가온길 사천여고 사회적협동조합	16.10.06	경남	고	사천여고	매점&교육
32	금북 사회적협동조합	16.10.24	서울	초	금북초	방과후 등
33	만덕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6.10.27	부산	고	만덕고	매점&교육
34	범어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6.11.24	경남	고	범어고	매점&교육
35	보광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6.11.28	경남	고	보광고	매점&교육
36	충북고등학교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16.12.08	충북	고	충북고	매점&교육
37	양평고등학교 창업체험센터 사회적협동조합	16.12.26	경기	고	양평고	방과후마을학교 등
38	운양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17.01.05	경기	고	운양고	매점&교육
39	청옥초 사회적협동조합 푸른빛 나누리	17.02.07	경기	초	청옥초	매점&교육
40	성수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7.03.28	서울	고	성수공업고	교육(진로)
41	태봉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7.03.29	경남	고	태봉고	매점&교육
42	대송 사회적협동조합	17.03.29	대구	고	대구방송통신고	교육(진로)
43	연당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7.04.12	강원	초	연당초	농업&교육



● 참고자료
학교협 동 조합 활성화 법률 초안

(가칭)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 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7. . .

발 의 자: 의원(인)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대한민국의 비약적 경제성장 이면에는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의 휴유증이 국가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이는 정치·사회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양육하는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한국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는, 제3섹터로 통칭되는 사회적경제가 유독 주목되어 국가와 시민사회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해 사회공공성 확대와 선순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왔으며, 그 중 협동조합은 2016년 12월말 기준 10,671개가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교협동조합은 교육과 연구에 필수적인 복지환경 창출을 기본목적으로, 구성원

스스로의 직접운영을 통한 협동체험으로 민주적훈련의 장을 제공하며, 공동체의식 함양등 현재 교육이 담보하여야 할 기능을 수행하므로서 국가 미래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는 학교협동조합이 청소년기의 인성함양에 있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승자독식이 아닌 따뜻한 분배'를, '속도보다는 방향'을, '개인이 아닌 우 리'를 위한, 국가기본교육 목표에 유력한 보조체로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에 기대를 갖고 있음.

하지만 그간 학교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대학교)과 협동조합기본법 (중고등학교)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시설 사용허가 등이 국가와학교에 있으며, 학교협동조합을 수익사업으로 인식하는 현실속에서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잦은 정책변동에 따라 일상적 존폐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을 제정하여 공익재로서의 교육기관 정립에 이바지하고, 그 과정에서 협력과 공생의 이론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과 국가에유의미한 미래성장동력이 되고자 함.

제정하고자 하는 법은, 학교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국가와 학교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학교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 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교육공공성을 명시화 함.
- 나.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 비영리성을 명시화 함.
- 다. 국가 등(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의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지 원계획 수립을 규정 함.
- 라. 학교협동조합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 함.
- 마.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국회 보고를 정기화 함.
- 바.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타 법률 등 개정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법 주요사항(안)

1. 목적

이 법은 비영리 학교협동조합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상부상조를 통한 복리증진과 협동문화 활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미래인재양성과 국가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협동조합의 정의

- ①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
- ② 기타 협동조합기본법 등 타법률에 의거 설립되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조합, 연합회

3. 국가 및 지방자치(공공)단체와 학교의 협력과 지원

제00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학교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국가의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협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제1항과 제2항의 시책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및 발전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의 지원)

① 국가 등은 학교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협 동조합이 사용하는 시설 및 물품의 무상사용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등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등은 학교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 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 ① 국가 등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비영리적 교육목적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지방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등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학교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④ 국가 등은 학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물품에 대해 우선 구매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4. 학교협동조합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00조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협동조합의 자율적 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 2.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 3. 국가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 4. 학교협동조합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5. 학교협동조합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 에 관한 사항
- 6. 학교협동조합 실태조사와 그 결과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 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 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00조 학교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① 학교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학교협동조합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 3. 학교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행정 간소화 방안
 - 4. 학교협동조합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 5.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 학교와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 6. 학교협동조합 인재양성과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 7.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8. 학교협동조합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 9.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30인이내로 구성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3. 학교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속해 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점검하여 이행사항과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0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학교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 1. 학교협동조합 활동가 양성과 학교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2. 학교협동조합의 모니터링 및 평가
 - 3. 학교협동조합의 지역 및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 운영 지원
 - 4. 학교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32 • 풍요로운 대학생활의 동반자 협동사회의 큰 기둥 대학생협

- 6. 학교협동조합 관련 국제교류 협력
- 7. 제00조에 따른 학교협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 8. 제00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한 사업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 사업
-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수 있다.

9. 타 법과의 관계

제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인천대를 포함한 국립대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0년 이내에 제0항과 제0항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련된 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사업

여러 유관단체들과의 연대와 회원조합들의 힘을 모아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정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사업

연합회에서는 공동구매, 공동계약 활동을 통해 매점, 식당, 카페. 문구, 자판기등 회원조합에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지원사업

대학생협의 활동과 상생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상담', '자료제공', '컨설팅'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국제협동조합연맹 아시아, 태평양지역 대학생협 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통해 아시아 지역 12개 나라에 한국의 대학생협운동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조합들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조합원, 임원, 실무자 등) 사업을 지원합니다.



홍보 및 출판사업

각종 교육교재 및 자료를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대학생협 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University Cooperatives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6 2층 tel) 02-324-6766 fax) 02-324-6569 univcoopkr@gmail.com univcoop.or.kr

